

##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및 집행기준 개정 안내

(BK21사업팀, '23.6.16.)

# 1 추진 배경

#### □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생 프로그램 관련

○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생 프로그램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한 대학 현장 혼란 발생

### 2 지침 및 집행기준 개정(안)

#### □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생 프로그램 참여 지원 기준 명확화

- ㅇ 관련 규정: 지침 【별표 5】,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9조
- 개정 사유: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생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한 대학 현장 혼란 해소 필요
- o 개정 방향: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생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여 기준 명확화

#### < 지침 및 집행기준 개정 전·후 주요 비교표 >

구 분	현행			개정(안)		
지침	구분	집행 기준	비고	구분	집행 기준	비고
【별표 5】 (대학원 혁신지원비 예산편성 비중 및 집행기준)	3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	• BK21 사업 교육 연구단(팀)의 교육 과정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 과정생 지원금	- <b>4흐년 1호기생</b> 에 한해 지원 가능	3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	• BK21 사업 교육 연구단(팀)의 교육 과정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 과정생 지원금	- <u>약사비성 최종</u> <u><b>학기생</b>에 한해</u>





 구 분	현행	개정(안)		
T E	2 8			
	① BK21 사업 교육연구단(팀) 교육과정 및	⑦ BK21 사업 교육연구단(팀) 교육과정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학·석사 연계과정 및		
	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학·석사 연계과정 및	통합과정생에게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		
	통합과정생에게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	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. 장학금은		
	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. 장학금은	지침 제48조 제5항에 편성된 장학금		
	지침 제48조 제5항에 편성된 장학금	지원 프로그램 편성액의 30% 이하로		
	지원 프로그램 편성액의 30% 이하로 집행 가능하다. 이 때, 지원 대상은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 4학년 1학기생으로 한정한다.	집행 가능하다. 이 때, 지원 대상은 <b>4대</b>		
		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학·석사		
		연계과정 및 통합과정 <b>중 학사과정</b>		
		8 전문기관의 장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생 중		
		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		
		지원 프로그램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.		
-		<u>다만, 이 경우에도 학·석사 연계과정 및</u>		
		통합과정생은 교육연구단(팀) 교육과정		
산편성 및		및 연구 활동에 전념하여야 한다.		
<b>집행기준</b> 제29조		1. 대학생 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		
∥∠9소 육·연구	<신설>	위해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에		
로그램	<u> </u>	<u>가입된 사람</u>		
		2. 대학생이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		
		있도록 대학생 가족에 대한 의료		
		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		
		<u> 가입된 사람</u>		
		3. 학업을 목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		
		기간 동안 연속하여 무급휴직을 한 사람		
		4.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		
		한 사람		
		⑨ <u>제8항에 따른 예외사항을 인정하기</u> 위해서는 교육연구단(팀)의 장이 해당		
		대학생에 대한 예외사항 내용, 예외사항		
		적용기간, 증빙자료 및 확인서 등을		
	<신설>	구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소명하여야		
	<u> </u>	한다. 만약 소명을 하지 않거나 소명이		
		불충분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		
		해당 대학생을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		
		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.		
		<u> 기ㅇㅡㅗ ㄴㅇΥハ ᆭᆯ ㅜ ㅆ녓.</u>		

<sup>※</sup> 개정사항 전문은 [붙임] 참조



# 붙임 지침 및 집행기준 개정(안) 신·구 조문 대비표

구 분	현행			개정(안)				
	【별표 5】 4딘 대학원 혁신지원 집행기준		한국21 !성 비		【별표 5】 4도 대학원 혁신지원 집행기준		한국21 !성 비	사업 중 및
	구분	집행 기준	비고	편성 비중	구분	집행 기준	비고	편성 비중
	1. 인건비  2. 국제화 경비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	1	1. 인건비  2. 국제화 경비	<현행과 - 같음>	<현행과 같음>	1)
지침	3. 교육연구 <u>프로그램</u> 개발·운영비	• BK21 시업 교육기선팀의 교육괴정 및 연구 활동에 참 여 하 는 학석사 연계 과정 및 통합과정생 지원금	- 4후년 1후7생에 <u>한해 자원</u> 기능	2	3.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	• BK21 시업 교육기전팀의 교육괴정 및 연구 활동에 참 여 하 는 학석사 연계 과정 및 통합과정생 지원금	학기생에	2
	4. 교육·연구 환경 개선비(시설비) 5. 연구장비 및 기자때 구입·운영비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<현행과	1	4. 교육·연구 환경 개선비(시설비) 5.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·운영비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	1)
	6. 기타 사업 운영비			5% 이내	6. 기타 사업 운영비			5% 이내
					①: 인건비+교육·연구 환경 개선비(시설비)+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·운영비 합 50% 이내 ②: 국제화 경비+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 운영비 합 50% 이상			
		프로그램	개발·운	·영비)	제29조(교육·연구	프로그램	개발·운	·영비)
	①~⑥ <생략> ② BK21 사업 교육연구단(팀) 교육과정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생에게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. 장학금은 지침 제48조 제5항에 편성된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편성액의 30% 이하로 집행가능하다. 이 때, 지원 대상은 학·석사연계과정 및 통합과정 4학년 1학기생으로한정한다.				정 및 대한학금은 지원 집행 <mark>보험에</mark> 정 및			





7 8	실췌	게 돼 (이)
구 분	현행	개정(안)
	⑧ <u>&lt;신설&gt;</u> ⑨ <u>&lt;신설&gt;</u>	® 전문기관의 장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생은 교육연구단(팀) 교육과정 및 연구 활동에 전념하여야 한다. 1. 대학생 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2. 대학생이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생 가족에 대한 의료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3. 학업을 목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연속하여 무급휴직을 한 사람 4.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 ⑨ 제8항에 따른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연구단(팀)의 장이 해당 대학생에 대한 예외사항 내용, 예외사항 적용기간, 증빙자료 및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소명하여야 한다. 만약 소명을 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대학생을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.